

내가 납부하는 자조금으로 한우산업의 안정 및 발전이 이뤄집니다.

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

우0664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-1 / ☎ (02)522-4292 / Fax (02)522-3605
사무국장: 장기선, 부장: 목철균, 과장: 지혜선, 대리: 윤승원 hanwoolove@daum.net

문서번호 : 한우자기 133-1-215호

시행일자 : 2021. 9. 2

경 유 :

수 신 : 한국축산물처리협회

참 조 :

제 목 : 권고도축우 한우자조금 거출 면제 기준 변경 알림

선결			지시	
접수	일자			
	시간			
처리과	번호			
담당자				

1. 제 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('21.8.26)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권고도축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제 도체중량을 기준을 200kg 미만에서 250kg 미만으로 상향하여 의결하였습니다.

2. 이에 제2종 가축전염병(브루셀라 및 결핵병 등)발생으로 인한 권고도축시 한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래와 같이 한우자조금 거출 면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 발생시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가. 자조금 거출 면제 대상

- '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'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(브루셀라 및 결핵병 등) 발생으로 인한 권고도축우로 도체중량 250kg 미만

나. 시행시기 : 2021. 8. 27부터 등급판정받은 한우

다. 증빙자료 제출

- 시·군청에서 발급한 '도태권고서' 1부.
- 대상축에 대한 도체중량 증빙자료(우정산서 등) 1부.

3. 아울러 수납기관에서는 자조금 거출 면제 대상우 발생시 도축두수 및 관련자료를 한우자조금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

등급평가사에게 해당두수를 알려주시어 등급관정 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한우자조금 거출 면제 기준 변경 공고문 1부.

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



권고도축우 한우자조금 거출 면제 기준 변경

제 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('21.8.26)에서 의결된 제2종 가축전염병에 따른 권고도축시 한우자조금 거출 면제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자조금 거출 면제 대상

- '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'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(브루셀라 및 결핵병 등) 발생으로 인한 권고도축우로 도체중량 250kg 미만
※ 기존) 200kg → 변경) 250kg

2. 시행시기 : '21. 8. 27(금)부터 등급판정 받은 한우

3. 기타 :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사무국에 문의(☎02-522-4292, 기획총무부)

2021년 9월 2일

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(인)

